

# 2016학년도 전기 졸업심사 세부 기준

## I. 목적

고등교육법·학칙 및 제반 관계규정에 의거 2016학년도 전기 졸업심사 대상자의 졸업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 II.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 제35조
2. 학칙 제55조 및 제80조
3. 학사관리규정

## III. 심사대상

1. 신입생으로서 8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이수하고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3학년 편입생으로서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이수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 중 7개 학기(편입생 3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6개 학기부터 가능하며,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 4.0 이상
4. 기 수료자

## IV. 심사대상자 유형별 기준

### 1. 졸업대상

졸업에 필요한 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필수 교과목 전부를 취득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2. 조기 졸업대상

조기졸업 신청을 하여 7개 학기(편입생 3개 학기)까지(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6개 학기부터 가능하며,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 4.0 이상)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필수 교과목 전부를 취득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수료대상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

### 4. 졸업 불가 대상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졸업심사원칙에 부적합한 자

## V. 심사기준 및 원칙

### 1. 일반 심사기준 및 원칙

#### 가. 졸업에 필요한 학기 및 학점

- 1) 신입학생 : 8개 학기 이상 140학점 이상
- 2) 3학년 편입학생 : 4개 학기 이상 70학점 이상

다만, 취득성적이 전부 “F”학점인 경우 이수학기로 인정하나, 계절학기는 이수학기로 인정하지 않음.

#### 나. 교양교과목과 관련된 심사원칙

- 1) 교양교과목 취득학점은 개설학과와 상관없이 졸업학점으로 인정
- 2) 교양선택 체육영역교과를 6학점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졸업인정학점 제외
- 3) 졸업시험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양교과목(영어 쓰기의 기초, 영어 읽기의 기초, 영어 말하기의 기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1),(2))는 졸업인정학점 제외
- 4) 교양필수 면제 대상 교과목

영역	대상 교과목	면제기준	면제내용/시간
독해	실용영어읽기와쓰기 고급실용영어읽기와쓰기	. TOEIC 860점 / TEPS 771점 . TOEFL iBT 96점 / IELTS 7.0	필수면제/ 2시간
회화	실용영어회화1·실용영어회화2 고급실용영어회화	. TOEIC Speaking 160점 . OPIc Speaking Intermediate-High	필수면제/ 4시간

※ 면제가 승인되면 [교양필수]만 면제되고, 면제학점에 해당하는 학점만큼 다른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해야 함.

#### 다. 전공교과목과 관련된 심사원칙

- 1) 전공교과목의 경우 별도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속학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교과목 취득성적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며, 졸업에 필요한 소속학과 전공교과목의 최저 취득학점은 아래와 같음.
  - ▶ '09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 70학점
  - ▶ '1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 75학점
  - ▶ 3학년 편입학생 : 35학점(2011학년도이후 경영학과 편입생은 45학점)
- 2) 편입학생에게 지정되어 취득한 선이수 교과목은 졸업인정학점에서 제외
- 3) 타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교과목 중 매 학기 주간9학점, 야간3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

#### 라. 중복 이수한 동일교과목과 관련된 심사원칙

중복 이수한 동일교과목의 중복된 취득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마. 교육과정 변경과 관련된 심사원칙**

- 1)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이수는 신 교육과정을 적용  
다만, 이수방법 및 적용시기 등 별도의 기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2) 구 교육과정에서 특정한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신 교육과정에서 동일 또는 유사대치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교과목 구분으로 인정하며, 구 교육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을 기 취득하였으면 그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함.
- 3) 소속 학부 및 학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교과목에서 제외함.
  - ① 필수교과목이 폐강되어 모집단위 및 학부 또는 학과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체교과목이 없는 경우
  - ②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교육과정통합위원회에서 학사운영상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심의한 경우
  - ③ 교육과정 개편에 의한 학기변동 등으로 졸업 전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 4) 신 교육과정에서 이수를 요구하고 있는 필수교과목이 이미 지난 학년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됨.
- 5) 구 교육과정에 의거 기 취득한 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의 상급학년에 다시 개설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됨.
- 6) 3학년에 편입학한 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구 교육과정상 3·4학년에 편성되었던 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상 1·2학년 과정에 편성되어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이를 인정함.
- 7) 교육과정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이 적용 받아야 할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신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 이수문제는 구 교육과정(지난 학년도)과 신 교육과정(현 학년도)의 공통 필수교과목만 이수하면 됨.
- 8) 영역별 교양필수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구 교육과정의 영역필수를 이수하지 않고, 신 교육과정의 영역필수를 이수하여도 해당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바. 계절학기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심사원칙**

- 1) 졸업에 필요한 학기에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 2) 졸업 직전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교과목은 학점취득 당해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졸업심사 전에 성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

**사. 부전공 및 복수전공과 관련된 심사원칙**

- 1) 허가연도별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이수 학점 기준표

- 2009학년도 이전 부·복수전공 허가자 전공이수 학점

전공 이수학점	구분	복수전공		부전공	
		신입	편입	신입	편입
소속 학과		70	35	70	35
복수(부)전공 학과		35	35	21	21

- 2010학년도 이후 부·복수전공 허가자 전공이수 학점

전공 이수학점	구분	복수전공		부전공	
		신입	편입	신입	편입
소속 학과		42	35	60	35
복수(부)전공 학과		42	35	21	21
복수(부)학과(경영학과) (2010년 2학기허가자부터)		45	45		

※ 2010학년도 이후 허가자들은 복수 전공학과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2) 2010년 복수전공 허가자부터 복수전공학과 교육과정의 필수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3)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은 부전공 또는 타 학과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4)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전환한 경우 ‘계열공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받은 학점’은 부전공이수 21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함.
- 5)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기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타 학과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 6) 부(복수)전공의 지정과목이 전공학과의 과목과 중복 시에는 전공학과 과목으로만 인정하고 부(복수)전공 지정과목의 부족분은 부(복수)전공 학과의 학과장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다만, 2010학년도 이후 복수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이 동일 유사학과군내의 계열공통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취득한 경우에는 9학점 이내에서 복수전공 취득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는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음.

**아. 복수학위 취득과 관련된 심사원칙**

공동(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공동학위프로그램 교육과정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본 대학 소속 학과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지정된 소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관련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 인증프로그램 이수와 관련된 심사원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부)는 졸업심사의 기준과 판정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하여 각 인증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관련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 2. 특이 심사기준 및 원칙

### 가. 신입학생

- 1) '91학년도 신입학생부터는 소속학과에 편성된 전공교과목 70학점 이상('10학년도 신입학생부터는 7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2) '90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은 교양 및 전공교과목에 관계없이 소속학과에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나. 3학년 편입학생

- 1) 3학년 편입학생은 3·4학년 과정에서만 70학점(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내에서 전공 교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저학년(1,2학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3학년에 편입학한 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구 교육과정상 3·4학년에 편성되었던 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상 1·2학년 과정으로 이동되어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이를 인정함.
- 2) 3학년 편입학생은 편입학 당시 해당학과에서 지정한 선이수 교과목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선이수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함.

### 다. 재입학생

재입학생은 재입학한 학년·학기(취득학점 기준)부터 공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라. 전과 학생

- 1)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년·학기와는 별도로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과한 학과의 공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2) 전과한 학생은 기 취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전과한 학과에서 인정한 교과목을 제외한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3) 학칙 변경으로 폐과 또는 학과 명칭변경 등으로 전과한 학생의 전공필수교과목 이수는 전과한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점의 해당 학년·학기부터 이수하게 됨.

### 마. 복학생

복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복학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공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바. 부전공, 복수전공, 인증프로그램 이수학생 및 공동(복수)학위 취득 학생

부전공, 복수전공, 공학인증프로그램 이수학생 및 공동(복수)학위 취득 학생의 졸업심사 확인은 소속 학과에서 함.

### 사. 전체학습구분 변경 학생

전체학습구분을 변경한 학생은 변경한 학년·학기와는 별도로 입학년도의 학습구분을 기준으로 변경한 학습구분 교육과정 이수

### 아. 학칙 변경으로 전체학습구분(야간)이 폐지된 학생

- 1) 전체학습구분을 변경한 학생(야간→주간)의 필수교과목은 변경된 해당 학년·학기부터 적용하여 이수
- 2) 전체학습구분을 변경하지 않은 학생(야간)의 전공교과목은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 전공교과목도 이수 가능

## 3. 이 원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